# 투자자문계약서

\_\_\_\_\_(이하 "고객")과 ㈜파운트투자자문(이하 "회사")은 다음과 같이 투자자문계약(이하 "본 계약")을 체결한다.

### 제 1조 (목적)

본 계약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, 고객이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투자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 제 2조 (용어의 정의)

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고, 그 밖에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자본시장법") 및 기타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 "전용계좌"란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에 수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내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새롭게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.
- 2. "투자자문재산"이란 전용계좌에 예치된 자산(금융투자상품 및 현금을 포함하며, 이하 본 호에서 동일함) 전체를 의미하며, 전용계좌에 예치된 자산은 회사가 고객으로 보무터 투자자문을 받은 자산으로 한다.

# 제 3조 (투자자문의 대상)

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
- 1. 자본시장법 제 4 조에 규정된 증권
- 2. 자본시장법 제 5 조에 규정된 파생상품
- 3. 그 밖의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

# 제 4조 (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)

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

- 1. 계약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
- 2.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자문
- 3.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대한 종류, 종목, 수량, 가격, 매매방법, 매매시기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
- 4. 그 밖의 제 1 호 내지 제 3 호와 관련된 부수업무

# 제 5조 (투자자문업무의 기준 및 절차)

- ①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수행에 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투자자문업무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기하기 위한 일반 지침
    - 가. 성실한 가치분석 및 투자모델에 따른 객관적 투자자산 가격 분석
    - 나. 데이터 분석에 의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시장상황을 고려한 정기적 포트폴리오 제안
    - 다. 안정적 수익창출을 위한 가치투자 철학 지향
    - 라.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위험관리
    - 마. 고객중심의 투자
  - 2. 성실한 조사분석을 근거로 한 가치중심의 합리적 투자: 합리적이고 신중한 투자를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한 투자 자문 제공
  - 3. 투자모델에 입각한 가격분석을 통한 최적의 투자: 투자성과의 안정성을 위해서 과학적인 투자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한 투자 자문 제공
  - 4. 투자전략 검증·검토 및 리스크 관리: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수립을 위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검증 및 사후 검토를 거치며,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기 위한 리밸런싱 자문 제공
- ② 회사는 다음 절차에 따라 투자자문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계약체결 전
    - 가. 고객 재무상태, 투자목적, 위험선호도 등의 파악
    - 나. 계약권유문서 교부
    - 다. 투자자문 관련 투자원리 및 전략 설명
  - 2. 계약 체결 : 투자자문계약 체결 및 <별지> 기재 최소자문금액 예치
  - 3. 자문 제공 :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고객 별 맞춤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수행 절차에 따라 진행
    - 가. 개별 고객의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고객을 위험 유형 별로 분류
    - 나. 시장DATA 분석을 기초로 고객 위험 유형별 최적 포트폴리오 산출
    - 다. 고객 유형 별 최적 포트폴리오를 고객에게 제공
  - 4. 수수료 수납 : 기본수수료 / 성과수수료 발생시 회사 계좌 입금



### 제 6조 (이해상충방지)

-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한다.
- ② 회사는 고객 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, 모든 고객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도록 한다.
- ③ 회사는 고객과 회사 간 또는 고객과 다른 고객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유지하며,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 제 7조 (투자자문수수료)

-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<별지>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.
  - 1.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<별지>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 1 회 선취로 징수하는 수수료이다. 회사는 기본수수료의 입금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자문 제공을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- 2. 성과수수료는 투자자문재산의 투자성과와 연동하여 고객과 합의한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이다.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계약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.
- ② 고객의 요청으로 본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으며, <별지>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한 기본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.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는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③ 제 1 항에서 규정한 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모두 포함하며, 다만 투자자문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제 3 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, 수수료, 보수 등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.
- ④ 제 1 항의 수수료는 전용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. 다만, 전용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받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5 영업일 내에 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며, 고객은 같은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전용계좌 내 재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.

# 제 8조 (투자자문 제공방법 등)

①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인력의 최종 판단을 거쳐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

- ②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, 투자경험,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 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, 매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.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재산의 내용이나 규모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방식, 유선,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.
- ⑤ 고객은 투자자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전용계좌에 투자자문재산 이외에 자산을 예치하지 아니하며, 위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본 계약의 중도해지 요청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보고 계약에 따른 제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### 제 9조 (업무의 위탁)

회사는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규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### 제 10조 (투자자문담당자의 선정과 변경)

- ① 회사는 투자자문담당자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의 의견 및 투자자문재산의 내용과 규모 등 사전에 조사된 투자자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투자자문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자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투자자문담당자의 사망·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⑥ 회사는 제 4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통지시에는 "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

- ② 고객이 제 5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⑧ 고객은 제 4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회사에 투자자문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# 제 11조 (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자문 관련 사항)

회사의 투자자문담당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여하였으며,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.

### 제 12조 (비밀유지의무)

-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가 투자자문업무 수행 중 제공한 내용을 제 3 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,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 3 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.
-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재산 내용과 관리현황, 신상내용 및 그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. 이는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효력을 갖는다.
- ③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전용계좌가 개설된 영업점에 전용계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다.

# 제 13조 (통지의무)

- ① 고객은 전용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, 지점 및 해당 계좌번호, 제 2 항에 따른 <별지>기재 통지처, 고객의 주소 및 기타 연락처, 그밖에 회사의 투자자문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 고객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, 회사와 본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며, 회사는 이러한 경우 고객의 상속인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의 유지 또는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-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<별지>에 기재된 통지처에 우편,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한다. 다만,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 1 항의 통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

# 제 14조 (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)

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은 시장상황의 예측, 목표수익률의 달성,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,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.

### 제 15조 (회사의 금지사항)

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관계법규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
- 1. 고객으로부터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의 보관·예탁을 받는 행위
- 2. 고객에게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금전·증권,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·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
- 3.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. 단,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4.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
- 5. 투자자문에 응하는데 있어서 금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 융투자상품,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 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. 단, 다음 각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- 가. 투자자문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
  - 나. 차익거래 등 투자자문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
- 6.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규에서 투자자문업무와 관련하여 금지하는 행위

# 제 16조 (면책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- 1. 천재지변,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
- 2. 서류 및 서명, 인감(또는 서명감)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- 3.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실



# 제 17조 (계약의 유효기간)

-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<별지>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.
-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 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"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"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.
- ④ 제 3 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의 투자자문재산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지급이 완료된 직전 계약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.

### 제 18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고객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이메일,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해지 요청 시 투자자문재산의 매매 주문에 대한 체결 및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주문의 체결 및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 해지가 연기될 수 있다.
-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,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의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, 압류절차, 기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투자자문재산의 거래에 제한이 있는 경우
  - 2.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,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,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
  - 3. 투자자문재산 인출에 따라 투자자문재산이 <별지>에서 정한 최소자문금액과 출금 신청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를 합산한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 (다만, 투자자문에 따른 투자 결과 위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함)
  - 4. 고객이 사망하였음에도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 거나, 전용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재산 상속 절차상 투자자문재산의 전 부 또는 일부 이전, 전용계좌 명의 변경 등 전용계좌 및 전용계좌에 예치된 투자자



문재산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

- 5. 경영상의 이유, 관련 법령이나 규제의 변화, 금융감독당국의 지도 등에 따라 투자 자문서비스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투자자문서비스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
- 6. 고객이 본 계약 또는 기타 회사와 체결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
-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투자자문에 의하여 실행된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### 제 19조 (계약, 만료, 해지 시의 재산형태)

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재산형태는 현금(원화)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하기 직전 계약의 만료 시점의 재산형태는 해당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하며, 그 외 고객과 회사 간 사전 합의 시 각 해당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할 수 있다(다만,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함).

### 제 20조 (투자자문재산의 평가)

제 20 조의 금융투자상품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 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는 계약일, 계약해지 시에는 해지요청일의 익영업일, 계약만료 시에는 만료일(다만, 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)(이하 "평가기준일")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 238 조(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)에 의한 재산 종류별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.

# 제 21조 (투자실적의 평가)

- ① 투자수익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과 계약기간 중 납입□인출된 평가자산을 가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투자자문재산 순자산가치 증가금액으로 한다. 이 때 평가자산의 계산은 제 20 조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(명확히 하기 위하여, 제 7 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세금, 수수료, 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).
- ② 증권(투자자문재산에 편입한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을 포함함)에 있어 배당,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,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한다.



### 제 22조 (계약의 변경 등)

- ① 회사는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계약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-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"고객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"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⑤ 회사는 본 계약 체결 시 <별지>에 기재된 고객의 이메일 주소로 본 계약서를 교부하고, 이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모바일 애플리케이션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본 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 제 23조 (세부계약조건)

본 계약의 본문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세부계약조건의 내용은 <별지>에 따른다.

# 제 24조 (관계법규 등의 준용)

-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「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」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.



# 제 25조 (분쟁조정)

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### 제 26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한다. 이에 따라 고객이 본 계약 체결에 동의하고 본 계약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본 계약이 체결된다.

년 월 일

(고객) 성명(법인명):

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:

(회사) 상호 : 주식회사 파운트투자자문

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13층

사업자등록번호: 374-87-00450

대 표 이 사: 김민복





<별지>

#### 세부계약조건

#### 1. 계약기간

-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.
- 계약체결일은 고객이 전용계좌의 개설 및 회사가 제공한 자문에 따른 주문 요청을 완료하고, 본 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날로 합니다.
- 투자자문 제공은 전용계좌에 최소자문금액 이상이 입금된 때로부터 개시합니다.
- 계약 만료일까지 고객으로부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 한 기간 및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.

#### 2. 투자자문재산

- 최소자문금액은 100만원으로 합니다.
- 계약갱신 시 갱신된 계약의 투자자문재산은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의 평가금액에서 지급이 완료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

#### 3. 투자자문수수료

- ① 기본수수료: 없음
- ② 성과수수료: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투자자문재산 투자수익의 15%
  - 기준수익률은 연 0%로 함.
  - 성과수수료는 계약의 매 1년 단위 또는 해지 시에 각각 성과 수수료 지급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발생함.
  - 단, 투자수익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더라도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투자자 문재산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 성과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음.
- ③ 중도해지수수료 : 없음
- ※ 계약기간 중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수수료는 변경 후 계약을 기준으로 잔존 계약일수에 대해 산정한 수수료와 기존 계약을 기준으로 경 과한 계약일 수에 대해 산정한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.

#### 4. 수수료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
● 성과수수료는 계약 만료일(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직전 계약의 만료일을 포함함) 또는 계약 해지일에 발생하며, 각 해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합니다.



● 성과수수료는 고객의 '수수료 출금이체 동의'에 의하여 회사가 정산하여 수령하며, 고객이 별도로 회사 계좌로 이체할 필요가 없습니다.

#### 5. 투자자문재산의 인출

- 계약기간 중 투자자문재산의 출금은 최소자문금액과 출금신청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의 합산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가능하며, 원칙적으로 출금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이경과한 날로부터 전용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.
- 갱신 없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투자자문재산에서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 기준 예상 성과수수료를 제외한 범위에서 출금 가능하며,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전용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통해 인출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투자자문재산의 처분 및/또는 환전이 지연되는 경우 위 기한보다 인출가능일자 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.

#### 6. 투자자문담당자에 관한 사항

성명	주요경력
김민복	<ul> <li>㈜파운트투자자문 이사</li> <li>㈜파운트 이사</li> <li>삼성증권㈜</li> <li>Cornell University 박사</li> <li>University of Washington 석사</li> <li>서울대학교 수학과 학사</li> </ul>
최병길	<ul> <li>♠파운트투자자문 이사</li> <li>♠파운트투자자문 대표</li> <li>삼성중공업㈜</li> <li>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사</li> </ul>
이원재	<ul> <li>㈜파운트투자자문 팀장</li> <li>㈜파운트 팀장</li> <li>㈜스톤인베스트먼트 대표</li> <li>동아일보사㈜</li> <li>뉴욕주립대 MBA</li> <li>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</li> </ul>

※ 위 전문인력은 과거에 내부자거래, 시세조종,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받은 사



실이 없습니다.

#### 7. 투자자문 대상 계좌 (전용계좌)

- 증권사(지점):
- 계좌번호 :
- 계좌소유자 :

#### 8.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

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개인이메일

#### 9. 기타 특약사항

- 고객의 '수수료 출금이체 동의'는 본 계약의 필수 요건으로 해당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며, 고객이 계약기간 중 해당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갱신 없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고 수수료 수취가 완료되는 경우 고객의 '수수료 출금이체 동의'는 자동으로 철회됩니다.
- 관계법규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하거나 운용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여 그 발행, 운용 또는 거래에 관여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투자자문 시 제안하는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#### 10. 로보어드바이저 유의사항

- 본 상품은 투자자문담당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참고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   보 자문 상품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문담당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원칙으로합니다.
- 투자자문담당자가 활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은 테스트베드(분산투자, 투자자 성향 분석,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・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 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)의 의무 참여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다.
-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의 성향에 맞는 투자자문・일임·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.
- 로보어드바이저는 평균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제시되는 투자조언으로서 금융시장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며, 시장상황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 로보



- 어드바이저를 통해 실현된 기존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 성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므로 투자자문담 당자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정확한 답변이 중요하며,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은 잘못된 자문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, 투자자는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에 임해야 합니다.

#### 11. 회사 개요,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사항

● 별도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.

